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10. 14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0. 9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10. 9
- 라. 상정일자 : 1996. 10. 14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박상용)

가.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소모품의 경우 그동안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가액의 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시켜 관리코자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 자

- 소모품의 5기준가액을 현행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토록 함.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개정 조례안은 서산시물품관리조례 「별표1」에서 정한 소모품의 기준가액을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 '88년 조례 제정 이후의 물가 상승등을 감안 현실화 함이 타당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

제안 번호	제 107 호
의결 년월일	1996. (제 회)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10. 9 .

서산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일자 : 1996. 10. P.

제출자 : 서 산 시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중 소모품의 경우 그동안 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을 소모품으로 규정하고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가액의 기준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 시켜 관리코자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골자

- 소모품의 기준가액을 현행 3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토록함.
[별표 1]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및 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9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 기타 참고사항 : 충청남도 회계 43500-1357('96. 8. 23)호 '96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조치

서산시 조례 제 호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물품의 품종 및 상태구분의 품종구분 기준의(2) 소모품④중 “3만원”
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手続을 公有財産으로 利用되고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인 경우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該國稅收을 補充하는 爲한 一定期間 公有財産을 利用하는 爲한 場合, 徵收하는 場合

② 第1項의 規定은 徵收의 關係에서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6條 市町村 公有財産의 管理의 爲한 補償(補償) 市町村 公有財産을 발견하여 補償을 請求하는 條例가 制定된 場合의 外의 外의 相當한 補償을 支給할 수 있다.

第89條 (財産關係 公署의 閲覧等) 公有財産의 事務를 執行하는 公務員이 公有財産 關係를 調査할 爲한 必要한 時에는 登記所 기타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필요한 書類를 閲覧 또는 謄寫하거나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第2節 物品

第90條 (物品의 定義) 이 章에서 "物品"이라 呼ぶ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動産과 地方自治團體가 管理하기 爲한 所屬하는 動産중 다음 各號의 것을 제외한 動産을 말한다.

1. 現金
2. 有價證券
3.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財産

第91條 (物品의 管理과 그 事務의 責任)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所屬에 속하는 物品을 管理하고, 必要 公務員에게 委任하는 物品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

第92條 (物品의 分類)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所屬에 속하는 物品의 사용과 處分の 爲한 必要한 適宜한 方法을 採취하기 爲한 物品을 그 사용과 處分の 目的에 따라 機能別, 性質別, 機關別, 品目別로 分類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分類은 地方自治團體의 計算의 爲한 物品關係總覽의 目的에 適合되 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計算의 爲한 目的에 따라서 分類하기 곤란한 경우 是의 限 이를 省略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分類의 標準과 기타 物品分類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령으로 정한다.

第93條 (標準化)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機關에서 사용하는 物品을 大統령에서 정하는 標準에 適合되 도록 標準化하여야 한다.

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반환의 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의 경우에는 1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8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2. 제1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7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3. 항소 제기전의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8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6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6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5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5. 상고 제기전의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의 경우에는 4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4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진행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의 경우에는 2년이내의 분할납부 또는 매각가격의 3할을 공제한 금액의 일시납부

②제 1 항의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제 2 절 물 품

제108조 (물품분류번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관물품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분류번호는 정부의 물품분류번호를 준용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할 수 없는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분류번호의 지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9조 (물품의 표준화) ①내무부장관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을 정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표준(내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표준을 "단체규격"이라 한다. 이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종류

- (1) 비 품 : 비품이라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2) 소모품 : 소모품이라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구분 기준

- (1) 비 품 : ①내용연수가 1년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
③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 (2) 소모품 :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연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연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상태 분류기준

- (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2) 중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써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 (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